

제337회 임시회
2015. 2. 5(목)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「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
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2015. 2. 5 (목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이의영 의원 등 7명

나. 발의일자 : 2015년 1월 19일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1월 20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1월 28일

(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이의영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2015년 1월 1일자로 ‘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’ 및 동
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농업기술원의 부장 직위가 국장으로
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‘연구개발부장’ ⇒ ‘연구개발국장’, ‘기술지원부장’ ⇒ ‘기술지원국장’ 으로 개정(안 제18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: 신선기)

- ‘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관련 조례와 규칙이 개정되어 농업기술원의 부장 직위를 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4항 중 “연구개발부장”을 “연구개발국장”으로 “기술지원부장”을 “기술지원국장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 ~ 제17조(생 략)</p> <p>제18조(위원회의 설치) 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원의 <u>연구개발부장, 기술지원부장</u>이 되며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⑤ (생 략)</p>	<p>제1조 ~ 제17조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8조(위원회의 설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연구개발국장, 기술지원국장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
관 계 법 령

□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[시행일 : 2015-01-01]

제21조(원장) 농업기술원장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의2에 따라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

제22조(하부조직) ① 농업기술원에 행정지원과, 연구개발국, 기술지원국을 둔다.

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, 연구개발국장은 농업연구관으로, 기술지원국장은 농촌지도관으로, 감사시험장장은 지방농업사무관·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.